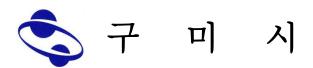
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 계 과

#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 (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)



###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

의 안 제출연월일 : 2025. 5. · 번호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○ 관내 중증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신축 필요

- O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2025년 정기분)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사업부지 변경(BF인증 위한 사업부지 증가) 필요성 발생
- O BF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)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차도의 구분이 의무 사항으로,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부지와 인접한 부지 (원평동 964-330번지, 4-4번지)를 진·출입 도로로 개설 필요
- 하천부지 점·사용자(원평동 964-330번지)의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제61조에 의거 지장물보상(영업손실보상 포함) 및 인접 토지(원평동 4-4번지, 답 86㎡)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 【취득재산】

### 《당초》

O 위 치 : 원평동 964-329(하천, 812m²)

○ 대 상 :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(300 m²)

O 기준가격: 1,700백만원(공사비, 설계감리비 등)

O 사업기간 : 2025 ~ 2026년

### 《변경》

- 위 치 : 원평동 964-329(하천, 812m²), 964-330(하천, 308m²), 4-3(제방, 536m²), 4-4(답, 86m²)
  - ※ 원평동 4-3(국유지)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협의 완료
- O 대 상: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(300 m²), 토지매입(86 m²)
  - \* 사업부지 면적 변경(812m²⇒1,742m²)
  - \*\* 이용 정원 10명 이내 / 종사자 7명 규모
- O 기준가격: 1,739백만원 (지장물이전비 등 미포함)
  - 건물 신축 1,700백만원
  - 원평동 4-4(86m²) 토지매입비 39백만원
- O 사 업 비: 1,820백만원 (국비 200 도비 140 시비 1,480)
  - 공사비(건축공사 등) 1,568백만원
  - 설계 및 감리비 132백만원
  - 토지매입비 39백만원
  - 지장물 이전비 등 보상액 81백만원
- O 사업기간 : 2025 ~ 2026년
- 주요시설: 거실, 조리실, 의무실, 사무실, 집단활동실, 화장실, 생활실, 비상재해대비시설 등

### 《 세부변경 내용 》

구 분	당 초	변 경	비고
위 치	원평동 964-329	원평동 964-329 외 3필지	
부지면적	812 m²	1,742 m²	중 930 m²
부지매입	없음(시유지)	39백만원(원평동 4-4)	증 39백만원

### O 추진현황

• 장애인 부모,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 간담회 : '24. 3. 14.

• 보건복지부 기능보강비(신축) 신청 : '24. 4. 12.

• 도비 예산지원 건의 방문 : '24. 4. 25.

•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건의 방문 : '24. 5. 7.

• 국회 예산지원 건의 방문 : '24. 8. 1.

•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: '24. 9. 11.

• 기존 사업부지 진출입로 BF 인증 불가 통보 : '25. 2. 3.

•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하천부지 점·사용자 협의 : '25. 2. 6.

### O 향후 추진계획

•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: '25. 5월

건축 기획 용역 시행
: '25. 5 ~ 7월

• 지장물보상 및 토지매입비 추경예산 확보 : '25. 7월

• 설계 및 BF 인증 : '25 7월 ~ 26 5월

• 공사 착공 및 준공 : '26. 6 ~ 12월

# 3. 근거법령

O「지방자치법」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#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	계		2	386	1,739
취득	1.매입	토지	1	86	39
	3.기타 취득	건물	1	300	1,700

# 취득재산 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m², 백만원)

_		재 산 의 표	시	츠저	치드	_		비고
구분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량(m²)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소유자	
총계			386	1,739				
<b>₹)</b> □	토지	원평동 4-4	86	39	2025년	BF인증을 위한 진·출입로 확보	김*분	진입로
취득	건물	원평동 964-329	300	1,700	2026년	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	구미시	신축

# 위치도

□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(원평동 964-329, 964-330, 4-3, 4-4)



#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 비용추계서 (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)

# I. 비용추계 요약

- 1. 재정수반요인
  -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
  - BF인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지장물보상 및 토지매입
- 2. 비용추계의 전제
  - 『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』 및 물가 상승률 등 감안 적용
  -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합계
세출	·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	520	1,300	_	_	1,820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200	ı	ı	_	_	200
도 비	140	ı	ı	_	_	140
시비	180	1,300	ı	_	_	1,480
민 간	_	_	-	_	_	_
기 타	_	_	_	_	_	_
합 계	520	1,300	_	_	_	1,820

#### 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

#### 6. 작성자

-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윤유진(054-480-5182)

# 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		분	금	액	산출내역	비	고
총	<b>-</b>	계	1,8	320			
	소	계	1,5	568		86.	1%
공 사 비	건 공 <sup>人</sup>	설	1,5	518	□ 공사비 × 1식 = 1,517,700,000원 - 건축설비공사 × 1식 = 1,167,700,000원 - 전기소방공사 × 1식 = 150,000,000원 - 토목공사 × 1식 = 200,000,000원		
	농 조선		5	0	□ 농지조성비 × 3식 = 50,300,000원		
	소	계	12	20		6.6	3%
취득	토 매약		3	9	□ 토지매입비 × 1식 = 39,000,000원		
비	지 <i>경</i> 보신		8	1	□ 지장물보상비 × 1식 = 81,000,000원		
	소	계	13	32		7.3	3%
<del>용</del> 원	설계	削削	1	10	□ 실시설계용역 × 1식 = 80,000,000원 □ BF인증 × 1식 = 30,000,000원		
判	감리	티비	2	2	□ 감리용역 1식 - 건축 감리 × 1식 = 13,000,000원 - 소방 감리 × 1식 = 9,000,000원		

※ 공사비 산정:『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』 및 물가 상승률 등 감안 적용

※ 설계비 산정 :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[별표4] 적용

제2종(보통), 20억원 이하, 10억이상 직선보간법 중급의 건축요율 (5.34%) 적용

- ※ 토지매입비 산정 : 감정평가 적용
- ※ 지장물보상비 산정 :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적용
- ※ 감리비 산정
  -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[별표4]적용 20억원 이하, 10억이상 직선보간법 1.23% 적용
  - 전기, 소방 수의계약 기준으로 적용

# 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~ 5. 생략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
- 7.~ 11. 생략
- ② 생략
- 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  - ② ~ ④ 생략
- 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

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-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 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

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 인 토지
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- ② ~ ③ 생략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
- 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-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-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

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⑤ ~ ⑦ 생략

2	소 관 부 서	회 계 과 (장애인복지과)
	과 장	임 웅 건 (최 연 호)
입	팀 장	정 세 황 (최 선 자)
안 자	담 당 자	정 민 주 (480-5072) (윤 유 진) (480-5182)